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현재의 근로자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월말 기준인지 또는 전년 말을 기준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당사는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으나 지난 7월말 감원으로 현재 약 4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라인의 폐쇄로 인해 근로자를 감원한 만큼 향후로도 총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시근로자라는 사회 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상대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의 축소로 현재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고 앞으로도 근로자를 충원할 계획이 없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단, 향후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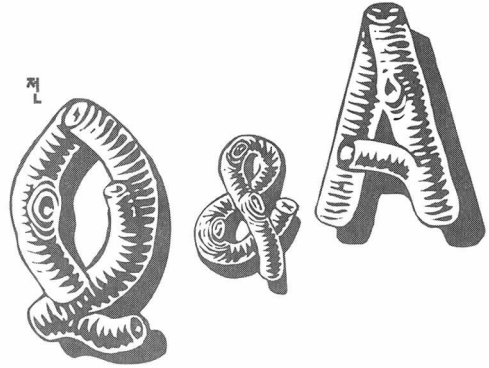
시가지 도로를 굴착하여 전기 관로를 설치하는 현장입니다. 다수의 아래 시설물들을 공사구간에 설치하는데 있어 안전시설물 항목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1. 라바콘
2. 안전웬스
3. 교통관련 안내표지 (교통제한, 우회등)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웬스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전기관로 매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라바콘, 안전웬스, 교통관련 표지판 등이 공사용 차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공사 외부 차량의 소통과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비목으로 동 비용을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영별표 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22번째 항목을 보면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순수 연구소 및 사무직 인원만 근무하는 경우 이 22번째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연구소가 이 22번 항목에 포함된다면, 순수연구인원이 30명 상주하고,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인원 3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봐야 하는 지 여부(상시근로자의 정확한 개념)를 알고 싶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실시 건

유기용제를 가지고 3-4달에 한번 짧은 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때를 맞춰 작업환경을 실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 질의 가항에 대하여

사업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업 목적상 순수한 연구 및 이의 지원을 위한 사무직 인원으로만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고 본사, 지사, 지점 등의 형태로 장소가 분리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나. 질의 나항에 대하여

귀하의 질문과 같이 순수연구인원 30명, 영업인원 30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는 50인이상으로 봐야하고 당해 연구소에 순수 연구인원 및 영업인원 등 2개업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종류가 있을 때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여부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라 함은 사회통념상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2항에 대하여

유기용제를 가지고 연구를 목적으로 3, 4달에 한번 짧은 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제117조 제6호 "카목"에 의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